

# ★수능 대비 사회계약설 개념 정리 - 홉스, 로크, 루소 입장 요약

## 1. 자연상태(홉스, 로크, 루소 서로 다름.)

- 1) 홉스 : 자연상태는 전쟁상태(만만투)임, 공통의 권력이 부재함.
- 2) 로크 : 자연상태 처음에는 평화적이었으나 자연법을 집행할 공통 재판관의 부재(결여)로 전쟁상태로 변함.  
(자연상태 = 잠재적 투쟁상태 = 비교적 평화상태)
- 3) 루소 : 자연상태 처음에는 사회상태가 아니라(인간들이 고립적으로 살아가니깐 전쟁할 일도 없으므로 자유·평등·평화로우) 無사회상태였는데 사유재산제가 발생하면서 전쟁상태로 변함.
- 4)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
  - ① 셋 모두 자연상태에서 공통의 권력 존재 부정
  - ② 자연상태는 처음부터 전쟁상태였거나(홉스),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로크,루소)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보존'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평화를 모색하게 됨. → 사회계약 성립의 계기로 작용
  - ③ 사회성(사교성)은 '인간의 모여 살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긍정함.

## 2. 자기보존 추구(홉스, 로크, 루소 입장 같음.)

- 1) 자기보존은 '생명, 신체'의 보존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재산)'임.
- 2) 자기보존 추구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직결됨.(홉스, 로크, 루소 모두 사유재산권 보장 언급)
- 3) 전쟁상태가 되어버린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보존을 도모할 수 있는가? → 합리적 계산능력인 이성(도구적 이성)을 활용하여 자기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사회계약 체결, 국가 성립)을 찾아냄.
- 4) 자기보존 추구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적 이익 추구임. 그러므로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But 사회계약은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만일 침해하면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처벌을 받음.
- 5) 사회계약 체결 결과 성립한 국가는 계약 위반자를 처벌할 권력을 지니게 됨. 동시에 계약당사자들의 자기보존을 보장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공동선(모두의 이익)이 달성됨. → 사익과 공익의 조화

## 3. 자연권 : 자연 상태에서 또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누리는 권리

- 1)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회계약에 의한 자연권 양도 인정함.
- 2) 자연권의 의미가 각자 다름.
  - ① 홉스 : 자기보존권 = 자기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 및 자유  
= 자기보존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cf. 홉스의 '평등'의 의미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에 있어 비슷함.  
(예시) 자기보존을 위해서 타인의 머리를 깎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대신 내 머리도 깎일 수 있음.  
→ 서로의 머리를 깎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모두 평등하게 가지고 있음.  
→ But,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전면 양도, But 생명보존권(자기 생명의 보존에 관한 권리=생명권) 양도 불가·유보  
(예시) 주권자가 어떤 사람(심지어 정당하게 유죄판결)에게 자살, 자해, 공격을 하는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유가 있음.
  - ② 로크 : 자연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유재산권 및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권, 처벌권(재판권도 포함)  
- 자연권(자유권, 평등권, 집행권, 처벌권)을 국가(정치사회)에 양도 → 자연권 일부 양도로 해석 X  
(로크 언급과 무관하게 미국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음.)  
- 자연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정치사회 진입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대신 시민권을 보유하게 됨. 다만 평가원은 로크의 경우 '자연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함.

③ 루소 : 자연권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지 않음. 자유, 평등 등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루소의 경우 힘, 재산, 자연적 자유,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 등 자기 자신을 전부 양도함.(by 일반의지)

cf. 루소는 신체, 능력, 재산, 자유, 평등 등을 '자연권'이라고 하지 않음.

- 자연권이 양도되면 그 자연권은 이제 국가의 시민이 된 개인들은 더 이상 지니지 못함.
- 예를 들어, 생명권을 양도했다면 국가의 시민은 더 이상 그 생명권을 '자연권'으로서는 지니지 못하며, 국가의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의 생명권을 지니게 되는 것임.
-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까지 그는 바로 이 조건하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그의 생명은 자연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물이기 때문이다." → 여기서 '조건'은 자신의 이익(생명.신체.재산 등) 추구를 인정 받되 타인의 이익 역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
- 자연권 양도(주권은 포함되지 않음.), But 주권(=입법권)은 대표·양도·분할 불가 → 자연권과 주권은 다름.

#### 4. 자연법

1) 홉스 : 자기 보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 이성이 발견한 원리 또는 일반적 원칙(평화추구, 자연권 포기·양도, 규약준수)

-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자연법은 타산적인 법칙으로서 어떤 행위가 각 개인의 자기 이익에, 자기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 줌.
- 인간들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욕망과 정념에 기초하여 행위함. 자연상태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강요함.
- 이성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일반원리 또는 규칙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줌.
- 이성은 우리가 자연 상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줌.(이성의 역할은 자연법의 발견)
- 홉스에게 있어 자연법은 일종의 전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임.
- So, 홉스에게 있어 자연법은 자연권(자기보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 즉, 자연권이 자연법에 우선함.
-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연법이 자연권과 무관하게 준수해야 할 도덕규범이라고는 보지 않음.
- 자연상태에서 지켜야할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음.
- 자연상태는 자연법은 있으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무규범의 상태임.
- 무규범 상태 즉, 선악 혹은 정의와 부정의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도 악도 없고, 정의도 부정의도 없는 상태임.
- 자연법은 자연상태에서 지켜야할 도덕규범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켜야할 규약·계약사항임.

2) 로크 : 보편타당한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존재하지만, 자연법을 집행할 법이나 공통의 권력은 없다고 봄.

- 기독교의 영향(중세 기독교 자연법 윤리 사상)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따라야할 자연법 (보편타당하고 영구적인 도덕법칙, 이성으로 인식된 신의 명령)이 자연상태부터 계속 존재한다고 봄.
- 자연법 = 자연상태에서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규범 = 자연법칙 = '이성'으로 인식된 신의 명령
-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인간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보편타당한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존재함.
-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할 법이나 공통의 권력이 없다고 봄.
- 로크는 홉스와 달리 자연법을 근거로 자연권(자유·평등·재산권) 보장을 주장함.

cf. 홉스에게 있어 자연법은 자연권에 근거한 수단적 법이지만, 로크는 신의 명령이자 질서인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 자연권이라고 봄.(홉스는 자연권이 우선됨. 로크는 자연법이 우선됨)

3) 루소 : 루소의 자연법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음.

- 다소 기존 자연법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음.

## 5. 주권의 소재 : 주권은 사회계약의 산물, 국가의 최고 권위, 주권은 입법권과 관련 있음.

- 1) 홉스 : 주권을 '1인 또는 연합체'에 부여할 수 있음. → 1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봄.  
→ '군주주권' 탄생 → 이 군주는 집행권, 입법권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절대권력'을 지니게 됨.
- 2) 로크 : 국민(인민:people)에게 주권이 있음. → '국민주권' → 입법권도 원칙적으로 국민이 가짐. → 이 입법권을 일정한 조직(의회)에 신탁할 수 있다고 봄.(그래서 입법권을 '국민이 보유한다'고도 하고 '의회가 보유한다'고도 함.) → But, 입법권은 어디까지나 신탁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 입법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항권' 개념임.
- 3) 루소 : 국민(인민:people)에게 주권이 있음. → '국민주권' → 입법권도 국민이 보유하며, 로크와 달리 입법권의 신탁을 허용하지 않음. →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입법하는 것만 허용함.(직접민주주의), 루소에 따르면, 입법권을 의회에 신탁하는 경우 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계급을 위한 입법을 한다고 보고 이를 비판함.
- 4) 홉스와 루소는 주권자가 절대권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홉스의 경우 1인(또는 연합체)가 주권을 갖지만, 루소의 경우 국민전체가 주권을 가짐. 루소에게 있어 '통치자도 국민, 피치자도 국민'이며, 이를 학술용어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고 함.

## 6. 사회계약과 통치계약

- 1)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참여하여 성립하는 계약이 '사회계약'임.
- 2) 국가 성립 후 피치자인 국가의 시민들과 통치자인 정부 간에 맺어지는 것이 '통치계약'임.
- 3)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자연상태의 개인들', 통치계약의 당사자들은 '통치자와 국가의 시민들'임.
- 4)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사회계약 외에 따로 통치계약을 언급하지 않음.
- 5) 이는 사회계약 시 이 계약이 주권을 포함한 권력 창출 문제까지도 규정한다고 보는 것임.
- 6)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로크의 입법권 '신탁(위임)'임. 신탁을 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사회계약이 아닌 통치계약에 속하게 될 텐데, 로크는 신탁(위임)에 대해 '계약'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음.
- 7) 최근 학자들은 이 신탁이 사회계약이 아니라고 하거나, 사회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함. 또는 사회계약 시 입법권 신탁(위임)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한다고 보고, 신탁은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8) 신탁(위임) 문제는 저항권과 관련이 있음.
- 9) 만일 신탁이 사회계약이라면 수탁자인 입법부(또는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계약 위반임을 들어 국민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그럼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 10) 로크는 설령 신탁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으며, 주권자가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입법권을 다시 신탁할 수 있다고 말함. 따라서 신탁(위임) 행위는 사회계약이 아님.
- 11) 그럼 신탁(위임)은 사회계약이 아니되, 통치계획인가? 로크는 이를 계약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가원은 '계약 위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탁(위임)을 '계약'이라고 보고 있음. 그 계약이 사회계약인지 통치계약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없음.

## 7. 만장일치와 다수결

- 1) 사회계약은 무조건 만장일치임.
- 2) 만장일치에 의해 사회계약이 체결되고 국가가 일단 성립되면, 이제 시민이 된 계약 당사자들은 많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때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됨.
- 3) 사회계약 자체는 만장일치에 의하지만, 이 사회계약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봄.

## 8. 사회계약의 목적

- 1) 홉스 : 평화와 안녕의 보장, 자기보존
- 2) 로크 : 자연권(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상호보존, 상호 간 평화 및 안전
- 3) 루소 : 자연상태에서 지니고 있었으나 불평등한 현실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현실적 사회에서 사회적 자유(=시민적 자유)로 복원하는 것

## 9. 사회계약의 내용

- 1) 홉스 : 자연인들이 자신이 지닌 모든 힘과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상호양도함으로써 그 하나의 인격(=리바이어던) 안에 결합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기로 한 자연인들의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수립함.  
★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신의계약 → 권리를 한 사람,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함. → 만인이 동일한 인격으로 결합 → 코먼웰스(국가), 리바이어던(주권자)의 탄생
- 2) 로크 : 자연적 권리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함. → 법률에 복종
- 3) 루소 : 각자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전체 공동체(= 인민전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에 복종함으로써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임.  
★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개인의 모든 권리 양도 → 개인을 일반의지 아래에 둠. → 국가, 정치사회 (공적 인격) 형성

## 10. 사회계약의 당사자와 저항권

- 1) 홉스 : 인민상호간 사회계약, 주권자는 사회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주권자인 절대군주가 계약을 위반한다는 관념도 성립 불가능함. 따라서 인민저항권을 부정함.
- 2) 로크 : 인민상호간 사회계약, 인민저항권 인정(국가가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때, 입법부가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
- 3) 루소 : 인민상호간 사회계약, 인민저항권 인정(정부가 주권(=입법권)을 찬탈한 경우)
- 4) 개인적 저항권 : 정당방위 상황, 따라서 침해가 현재적이어야 함. 홉스, 로크 모두 인정
- 5) 집단적 저항권 : 현재적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행사 가능(로크),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설립 가능(홉스X, 로크O, 루소O)

## 11. 정부의 역할

- 1) 홉스 :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여 국가 구성원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2) 로크 : 자연권(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존과 증대
- 3) 루소 : 주권자의 의사를 구현하는 업무 담당(= 집행권 행사)

## 12. 최선의 정체

- 1) 홉스 : 절대군주정
- 2) 로크 : 입헌군주정(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 3) 루소 : 민주공화정(직접민주주의-"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공화제는 입법권을 인민이 보유하는 것을 뜻함.